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5
----------	-----

2017. 4. 2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20일

-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병옥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대형·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방본부 분장사무 신설 (안 제14조)

-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안 별표2)

- 제천소방서 관할구역 : 제천, 단양 일원 → 제천시 일원

- 단양소방서 관할구역 : 단양군 일원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단양소방서 신설을 위한 개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16.3.3.)에 따라 테러·유해화학·지진 등 대형·특수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광역119특수구조단 설치를 위한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단양소방서 신설(2017. 9)에 따라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 일원으로 하고,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 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개정조례안은 테러·유해화학·지진 등 대형·특수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고, 단양소방서 신설(2017. 9)에 따라 종전 제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제천·단양 일원에서 제천시 일원으로 단양소방서의 관할구역을 단양군일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 광역119특수구조단 설치로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동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단양소방서 신설에 따라 각종 화재 및 응급구조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조정이라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5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 355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4월 1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5
----------	-----

제출연월일 : 2017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형·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단양소방서 개소 등 기구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본부 분장사무 신설 (안 제14조)
 -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 (안 별표2)
 - 제천소방서 관할구역 : 제천, 단양 일원 → 제천시 일원
 - 단양소방서 관할구역 : 단양군 일원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 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제천시 관 내	제천시 일원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보은군 관 내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옥천군 관 내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 내	영동군 일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증평군 관 내	증평군 일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진천군 관 내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괴산소방서	괴산군 관 내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음성군 관 내	음성군 일원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단양군 관 내	단양군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소방본부)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14조(소방본부)-----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광역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u>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